영상저널리즘 시대의 보도영상과 인격권

장호순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Ⅰ. 영상저널리즘과 인격권

언론에게 권력의 비판감시 기능을 기대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격권은 일종의 "부수적인 피해(collateral damage)"가 될 수도 있다. 전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민간인 희생처럼, 언론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격권의 침해도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무고한 민간인의 전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처럼, 인격권의 침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하에서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나, 명예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개인권도 또한 보장되어야만 한다"면서 언론자유와 인격권이 서로 상충될 때 그 해결 방식은 "어떠한 권리가 사회정의와 복지의 실현에 공헌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1] 대법원은 지나친 인격권 보호로 인해 언론의 비판, 감시, 고발 기능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법 제310조에 규정된 소위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왔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은 거듭 판결해 왔다.[2]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데, 그 중 TV와 같은 영상매체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크다. 인쇄매체에 비해 영상매체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그에 비례해 영향력이나 신뢰도 또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격년에 한번 실시하는 언론수용자조사결과를 보면 수용자들에게 TV는 다양한 언론매체 중 가장 신뢰하는 매체이고, 가장 유익하다고 여기는 매체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이기도 하다.[3]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3) 한국언론재단, 〈2010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2010년.

대중들이 인쇄매체에 비해 영상매체를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New York Times〉나 〈Economist〉와 같이 유익하고 권위있다고 인정받는 신문이나 잡지라 하더라도 TV만큼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통상 인쇄매체보다 영상매체를 선호하는 것은 영상과 음성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주목도와 이해도가 글로 전달되는 메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문자로 된 정보보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구성된 메시지를 지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4]

영상뉴스 제작자의 입장에서도 영상은 문자로서는 표현하기 힘든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다. 사진 한 장이나 짧은 동영상이 신문지면을 가득 채운 보도기사보다 더 그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百聞而不如一見" 혹은 "A picture worth a thousand words"와 같은 말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통된다. 게다가 대중들은 영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문자정보에 비해 더 정확하다고 믿고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사진이나 영상의 조작과 편집이 쉽고 일반화되었지만, 말과 글로 전하는 것보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전하는 것이 더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사람들은 믿는 것이다. 카메라를 통해 얻는 이미지가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오인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인식상의 오류이다.[5]

TV와 같은 영상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만큼, TV뉴스나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언론학자들은 영상저널리즘의 보편적 형태 중 하나인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주제선정, 취재관행, 방송내용의 진실성과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6] 국내에서 시사고발 프로그램 PD와 작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일반 기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PD저널리스트들은 사회개혁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시사고발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도 보도내용의 균형이나 객관성보다는 제작진의 주장이 담긴 결론을 도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 글에서는 보도영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판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국내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판례 중 영상화면이나 방송자막, 음성해설 등의 내용이 쟁점이 된 사건을 추출해 비교해 보았다. 더불어 2008년 4월 29일 방송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MBC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프로그램의 방송 이후 제기된 민-형사 명예훼손 소송과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을 분석해 보도영상에 의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에 적용된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진단해 보고자 한다.[8]

---

4) 박상수, 〈비전, 이미지, 그리고 포토저널리즘〉, 이채, 2009년.

5) 민병현, "TV시사프로그램의 의미구조분석 연구," 〈언론과학연구〉, 2009년 제9권 1호, 78-120.

6) 이승선, "TV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법적분쟁에 나타난 특성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005년, 통권 29호, 233-269; 최민재, "PD저널리즘 프로그램 영상구성의 객관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2009년, 제9권 1호, 198-226.

7) 김연식, 윤영철, 오소현, "PD저널리즘에 대한 인식과 제작관행," 한국언론학회 2005년 봄철정기학술대회, 35-40; 김연식, "방송저널리스트의 공정성 인식연구," 〈신문과 방송〉, 2009년 4월호, 151-157.

8) 이승선,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방송통신연구〉, 2011년, 통권 제74호, 64-98.

"TV와 같은 영상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만큼, TV뉴스나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Ⅱ. 영상저널리즘과 진실보도

일반적으로 보도영상은 직접 촬영한 영상의 편집이나 생방송 중계, 혹은 당사자나 목격자들의 진술에 근거한 재구성이나 재연 등을 통해 화면을 구성한다. 이때 보여주는 화면은 영상저널리스트의 주관적 선택과 배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결과물이다. 특정 장소나 인물의 촬영, 특정 장면의 선택과 강조, 카메라의 각도, 화면의 제목, 해설자의 내레이션, 배경음악 등에 따라 PD나 기자의 주관적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서 실제 내용과 관계없는 영상이 사용되기도 하고, 편집과정에서 실제와는 다른 현실로 재구성되기도 한다.

영상저널리즘의 객관성과 진실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의 취재보도와 기사작성에 적용되는 규범같이 영상뉴스의 촬영과 편집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 있다. 보도영상의 경우 현실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극단적인 하이 앵글(high angle)과 로우 앵글(low angle)을 지양하고 수평적 앵글(horizontal angle)을 선호한다. 인물 인터뷰 화면의 경우 극단적 클로즈업(close-up)을 피하고 상반신 이상 화면인 바스트숏(bust shot)이나 웨스트숏(west shot)을 선호한다. 또한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등으로 취재당사자의 초상과 인권을 보호하기도 한다. 국내 시사고발 프로그램별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사용한 횟수를 측정한 연구에 의하면, 〈추적60분〉이 평균 23.91회, 〈그것이 알고 싶다〉가 28.07회, 〈PD수첩〉이 16.70회를 사용하고 있었다. 몰래카메라의 경우 〈추적60분〉이 평균 2.35회 , 〈PD수첩〉이 2.23회, 〈그것이 알고 싶다〉가 0.73회를 사용했다.[9]

국내 TV 탐사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비록 심야시간에 편성되긴 하지만 권력층의 부조리 고발과 사회적 약자의 대변 기능을 발휘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편성현황과 담론구조를 분석한 2005년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인권과 복지문제로 나타났다.[10] 2008년 1년간 방영된 KBS의 〈추적60분〉과 MBC의 〈PD수첩〉,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제도와 사회감시' 가 44.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부정부패폭로' 가 21.5%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11]

TV뉴스와 탐사고발 프로그램의 제작-편성 관행이나 경쟁환경도 진실보도를 어렵게 한다. 국내 주요 뉴스의 경우, 40분 정도의 방송시간에 약 30개 정도의 기사를 방영한다. 따라서 한 사건을 1분 20초 내외로 짧게 전달해야 한다.[12] 그 과정에서 사실의 축약이나 배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탐사 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충분한 방영시간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한다. 부패비리 고발 위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충

9) 최민재, "PD저널리즘 프로그램 영상구성의 객관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2009년, 제9권 1호, 198-226.
10)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PD저널리즘의 성과와 과제〉, 2005년. 윤호진, "PD저널리즘 프로그램의 편성현황과 담론," 〈프로그램/텍스트〉, 2005년 12호.
11) 최민재, "PD저널리즘 프로그램 영상구성의 객관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2009년, 제9권 1호, 198-226.
12) 이준웅, 황유리, "한국형 방송 뉴스 도식의 발견," 〈한국방송학보〉, 2004년, 통권 제18-3호, 232-292. 최민재, "TV뉴스의 영상구성에 대한 패러다임 연구," 〈방송통신연구〉, 2005년, 통권 제60호, 323-349.

분한 화면 확보가 어려울 경우, 몰래카메라의 사용 등 취재과정에서 법적 윤리적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13]

치열한 미디어 경쟁환경도 영상저널리즘의 진실성을 위협하고 인격권 침해를 유도한다. TV뉴스나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경우, 동종 프로그램, 즉 다른 방송사의 뉴스나 시사고발 프로그램만이 경쟁대상이 아니다. 시청자들이 100여개가 넘는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TV 저널리즘 프로그램은 다른 방송사의 드라마, 스포츠, 토크쇼 등 오락프로그램과 경쟁해서 시청자를 확보해야 한다. 결국 보다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선정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충격적인 화면을 자주 보여주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 결과 TV뉴스 보도나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환경감시라는 본래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상업주의 논리에 밀려 시청률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14]

Ⅲ. 보도영상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

보도영상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소송은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으로 구분된다. 명예훼손 소송은 사실이 아닌 영상이나 당사자와는 무관한 영상의 사용으로 인해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생활 침해 소송은 촬영화면의 공개로 인한 개인의 수치스러운 사적 사실의 공표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대부분이고, 영상화면의 촬영과정에서 무단침입이나 주거침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도 사생활 침해 사례로 포함시킬 수 있다.

1. 보도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법부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의 피해자가 공인이거나 보도내용이 공적 관심사안이라면 명예를 훼손한다하더라도 언론자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판결해왔다. 헌법재판소는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특히 형사처벌을 하려면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가 분명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공인이나 공익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보다 언론자유를 존중해야한다는 점을 판결을 통해 강조했다. 언론의 보도내용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과 달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15]

가. 허위보도

〈서울중앙지법2005. 12. 28. 선고 2005가합19052 판결〉

MBC가 펜션분양 사기와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화면에 등장한 회사가 사기분양을 했는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원고의 회사가 사기분양을 한 업체인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해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오후 9시 뉴스데스크에서 "고수익 사기"라는 자막 제목의 기사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 뒤 투자금을 챙겨 달아나는 사기행위를 보도하면서 원고의 모습과 회사화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MBC는 원고의 회사가 펜션사기

13) 김경호,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와 인격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2003년 제47권 4호, 246-273.
14) 강형철,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내용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007년, 통권 제21-1호, 7-46.
15) 대법원 2002.1.22.선고 2000다37524, 37531판결, 2003.1.24.선고 2000다37647판결.

"치열한 미디어 경쟁환경도 영상저널리즘의 진실성을 위협하고 인격권 침해를 유도한다. 보다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선정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충격적인 화면을 자주 보여주는 경향이 나타난다"

를 벌이는 회사인지를 입증하지는 못했고, 소송이 제기되자 "기초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삽입된 화면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방송사가 사건 보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촬영화면 중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단53387 판결〉

MBC는 오후 9시 뉴스데스크에서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한 뉴스에서, 성남지청의 한 검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기고, 이미 횡령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을 같은 혐의로 재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방송기자는 동일한 범죄로 재수사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제보자의 제보를 받고 담당검사를 찾아가 사실여부를 확인하려 시도했다. 담당검사와 형사부장은 수사 당시는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성급한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했으나 방송이 되었다. MBC는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 외에 "불법적으로 구금하였다" "사법사상 처음"이라는 용어를 덧붙이며 검사와의 인터뷰 장면과 함께 방영했다. 대법원은 방송내용이 "검사로서 수사 및 기소 업무를 공정하고도 사려 깊게 처리하여야 할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자가 검사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고, 담당 검사에게 반론기회를 부여하는 등 언론사 측에서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지법 2000. 1. 19. 선고 99가합42730 판결〉

건국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현승종 전 국무총리를 친일 매국노라고 지칭한 교수와 학생들의 화면을 아침 뉴스시간에 방송한 MBC에 대해서 정정보도와 더불어 1억원의 손해배상을 법원이 명령한 사건이다. 현승종 전 총리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제시절 학도병으로서 일본군에 복무한 사실을 고백했는데, 이를 두고 건국대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이 친일 전범 매국노라고 주장하며 학교재단 이사장 퇴진을 요구해 학내 분규로 확산되었다.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MBC는 현승종 이사장의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현승종 이사장의 퇴진을 주장하는 교수와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만을 취재한 후 편집해 방송했다. 법원은 비록 방송 내용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 사건 방송의 일부 내용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내세워 원고를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비방하려는 간접적인 의도"가 담긴 허위의 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자동차연비향상 장치가 제조업자들의 광고와 달리 연비향상이나 매연절감의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KBS 뉴스에 등장한 제조업자가 KBS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판결이다. 자동차연비향상 장치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인터뷰한 제조업자가 실제로 부실제품의 제조업자인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부실제품 제조업자인 것처럼 편집해 방영한 결과였다. 대법원은 TV영상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

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나. 피해자 특정

영상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판례를 보면, 영상보도에 소송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비록 방송사에서 당사자의 신상 화면을 보여주지 않고, 보여주더라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방송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대법원은 전남 나주시에서 한센병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마을금고를 운영하다가 불법대출과 횡령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방송사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PD수첩〉 2001년 7월 4일 방송에는 원고의 처벌을 주장하면서 한센인들이 검찰청에서 시위하는 장면, 원고가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는 장면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원고의 얼굴이 직접 공개되진 않았다. 하지만 원고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한센인들이 시위하는 장면이나 사건관련 서류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 등이 화면을 통해 방영되었다.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언급은 보도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가 불가피하고, 피의사실이나 범죄사실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한센인들이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시위장면들을 보도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진실보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했다.

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허위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신원도 확인이 가능할 경우 설사 방송사가 피해자 신원을 직접 공표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MBC의 〈시사매거진 2580〉에서 충북지방경찰 기동수사대가 윤락범죄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들을 폭행을 하고 성추행에 가까운 몸수색을 했다는 내용을 폭로하자 해당 부서 소속 21명의 경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방송화면은 수사담당 경찰관이나 동료 경찰관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은 변조해 방송했다. 그러나 기동수사대의 현판과 건물을 반복해 보여주어 해당 경찰관의 소속은 알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MBC 〈시사매거진 2580〉의 방송내용이 "일반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단지 담당 경찰관 개인이 편파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동수사대 전체가 그러한 수사를 하였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법원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수 없고,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도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21명에 불과한 기동수사대 소속경찰관 전체의 명예가 방송내용에 의해 훼손되었다며 집단전체의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서울지법 1999. 6. 23. 선고 99가합14391 판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검사에 관한 KBS 오후 9시 뉴스보도가 허위로 판명되어 1억원의 손해배상을 법원이 명령한 사건이다. 호텔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한 대기업 간부에게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담당 검사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을 보도

"방송보도로 인한 사생활/초상권 침해 판례를 보면, 개인의 수치스러운 사실의 공표로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나 취재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한 내용과는 다른 취지로 화면 혹은 음성을 공표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하면서 KBS 뉴스는 "납득하지 못할 영장 기각"이라는 제목으로 근무 중인 경찰을 폭행한 경우 구속이 일반적인데 불구속 처리되었다는 내용과 피의자의 처남이 동료검사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구속영장기각이 매우 부당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송내용이 사실과는 다르다며 담당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방송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비록 방송화면을 통해 담당 검사를 인식하거나 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있다고 보았다.

2. 보도영상으로 인한 사생활/초상권 침해

헌법은 제16조의 주거의 불가침,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제18조 통신의 불가침 등 비교적 명확하게 사생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사생활이란 '타인이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권(the right to be left alone)'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고유 영역을 말한다.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주로 초상권의 오용이나 사생활의 비밀 공표로 발생한다. 대법원은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6]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언론보도가 개인의 사적 비밀을 대중에게 노출시켜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또한 민법 제764조에 따라 배상의 의무도 주어진다. 사생활 침해의 경우도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소송과 마찬가지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가 규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17] 그러나 언론보도로 인해 사생활 침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진실여부는 규명할 필요 없이 공익성 여부만 판단하게 된다. 즉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언론보도라 하더라도 공익성이 입증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방송보도로 인한 사생활/초상권 침해 판례를 보면, 개인의 수치스러운 사실의 공표로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나 취재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한 내용과는 다른 취지로 화면 혹은 음성을 공표함으로

16)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 42789 판결.
1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 3309 판결.

써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18]

가. 수치스러운 사실의 공표

〈부산지법 2010. 3. 26. 선고 2009마18455 판결〉

부산지법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일하고 있는 원고의 모습을 약 3초간 방영한 지역방송사에게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고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원고는 2009년 설 연휴 기간 교통상황을 보도하던 지역방송 뉴스에 "밝은 표정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화면에 등장했다. 그러나 문제의 화면은 이미 2년 전 촬영한 것으로 원고는 한국도로공사를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원고는 방송사가 당사자의 허락 없이 해당 장면을 촬영해 방영한 것으로 현재는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신의 명예와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부인했으나 초상권 침해는 인정했다. 부산지법은 판결문에서 설사 해당 화면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되는 어떤 필연성이나 그 초상을 촬영함에 있어 미리 원고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만큼의 긴급성"도 없었고, 원고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방송사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 2000. 10. 11. 선고 2000가합4673 판결〉

서울지법은 지하철 성추행혐의로 체포된 공무원의 신원을 공개하고 얼굴도 보여준 방송사에 대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며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공인에 해당하는지 판별하지 않고, 방송내용의 공익성 여부만을 판별했다. 범죄보도가 공익성을 띠는 경우는 그 내용이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에 중점이 놓여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피의자의 성명이나 신상정보 등 개인적인 사항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이를 밝히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있어 지대한 정보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공익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원고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의 개인적인 신상까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은 아니라고 법원은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 현장을 보도한 방송뉴스로 인해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지위 여부에 따라 소송의 경과가 달라졌다.

〈서울지방법원 1999. 10. 22. 선고 99나49001 판결〉

한 방송사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원고의 모습을 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촬영하여 방영하자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되었다. 서울지방법원은 "평범한 시민에 불과한 원고의 촬영거부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원고를 알 수 있는 형태로 원고의 모습과 음성 및 행동을 방영, 원고의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수없이 많이 행해지는 단순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그 행위자가 공적 인물이 아닌 이상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이 되는 것이지 그 '행위자'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18) 서울지법 1995. 9. 27. 95카합3438, 서울고등법원 1997. 9. 30 97나14240, 서울고등법원 1998. 1. 13. 97나43156, 대법원 1998. 9. 4. 96다1132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 4. 2. 98가합16857, 서울지방법원 1999. 10. 22. 99나49001.

"방송사들이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재대상으로부터 촬영 승낙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승낙을 받은 경우도, 승낙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승낙범위를 넘어서 촬영화면을 사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다"

1998년 대법원은 남편을 청부살해하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피의자가 신문사와 방송국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언론사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방송사도 포함되었다. KBS는 오후 7시 뉴스 시간에 피의자의 얼굴모습이 담긴 화면과 함께 피의사실을 보도했으나, 피의자는 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대중매체의 범죄보도는 범죄예방이나 대책마련 등의 여론을 조성하는 공공성이 있지만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언론사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언론매체의 범죄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서울지방법원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TV 뉴스 앵커를 지낸 한 방송사의 간부가 기자신분을 밝히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려다 몰래 촬영당해 타방송사에 보도되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행동을 촬영하여 방송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서나 전체적인 인상으로서나 충분히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공인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언론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료로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로 인한 교육적, 계몽적 효과도 매우 크다"고 보았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했다. 음주운전의 "행위자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행위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행위자가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 자체가 바로 공공의 관심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나. 승낙 여부

방송사들이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재대상으로부터 촬영 승낙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승낙을 받은 경우도, 승낙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승낙범위를 넘어서 촬영화면을 사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9. 4. 2. 선고 98가합16587 판결〉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인신매매에 관한 고발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서울역 부근 일용노동자들에게 인신매매범 조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며 인터뷰 촬영을 요구했다. 원고들은 얼굴과 목소리 등을 조작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신원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촬영에 응했다. 그러나 정작 방송에서는 음성변조도 하지 않았고 얼굴 일부분을 방영하여, 주위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법원은 방송사가 원고들의 신원을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범인 것처럼 시청자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편집하여 방영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배상을 명령했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1994년 MBC 〈PD수첩〉이 유방확대수술의 후유증

문제를 보도하면서 취재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화면에 원고의 옆모습 윤곽이 그대로 나타나고 음성이 변조되지 않자 취재원이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언론이 취재원의 승낙을 받고 개인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보도했으나 그 승낙범위를 넘어 개인의 신분을 공개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설사 유방확대수술의 부작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의 신분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속한 사항이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며 방송사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1. 13. 선고 97나43156 판결〉

MBC 〈시사매거진2580〉이 신세대 대학생들의 생기발랄하고 재미있는 신입생 환영회를 취재한다고 학생들을 설득하여 승낙을 받아 취재한 후, 실제로는 신입생 환영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내용에 화면을 사용해, 마치 그들이 퇴폐적인 신입생 환영회를 한 것처럼 오인케 했으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라고 판결했다. 설사 방송프로그램이 공익성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원고들의 사생활 비밀 및 초상권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1996. 6. 18. 선고 96나282 판결〉

불법 방북으로 유명해진 한 여성인사의 결혼식 장면을 촬영하여, 당사자와는 무관한 호화결혼식을 비판하는 뉴스에 사용한 방송사에 대해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원고가 공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세인의 관심을 끄는 공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하여, 더욱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초상이 공표되는 것까지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원고의 승낙여부에 대해서도, 설사 원고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원고의 모습을 촬영할 당시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결혼식 보도에 관한 사진 또는 화면을 공표하는 데 대한 동의한 것일 뿐, 그 화면을 향후 방송사가 어떤 목적이든 상관없이 사용하라고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 무단침입

〈서울고등법원 2001. 1. 11. 선고 99나66474 판결〉

한 대학교수의 불법 교습행위를 다룬 SBS 방송보도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은 사적 공간에 대한 방송기자의 무단침입 행위를 인정하고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방송제작진은 경찰과 함께 사건현장에 출동하여, 당사자의 승낙 없이 음대교수와 그의 학생 및 학부모를 촬영하여 방영했다. 법원은 불법 과외 교습에 관한 방송사의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취재-보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적인 장소는 비록 취재 당시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체포와 관련되어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이외에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그곳에서의 취재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며 방송사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

"개인의 사적인 장소는 비록 취재당시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는 때라고 하더라도 체포와 관련되어 적법절차를 갖춘 사람 이외에는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그곳에서의 취재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보도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도 주장되었으나 진실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Ⅳ. PD수첩 광우병 보도사건

MBC가 2008년 4월 29일 오후 11시에 〈PD수첩〉을 통해 방송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프로그램은 국민 수백만명이 참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의 기폭제가 되는 등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심야시간대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식생활 안전, 정부의 무역 정책, 대미 외교 관계, 세대간 정치 갈등 등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누적 현안들이 분출되면서 영상저널리즘의 엄청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MBC의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프로그램은 방송이후 정부 관리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가 제기한 민-형사 소송과 정정/반론보도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영상저널리즘의 공익적 역할과 인격권 보호 사이의 갈등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1. 방송내용

PD수첩의 방송내용 중 법적 문제가 된 부분은 영상화면 자체보다는 영상화면과 함께 제시된 자막이나 진행자의 언급내용이었다. 법적 쟁점이 된 2008년 4월 29일 〈PD수첩〉의 방송내용 중 명예훼손 소송의 쟁점이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주저앉은 소 부분

화면 : 미국 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 충격기와 물대포로 주저앉은 소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

음성 :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 그러나 지금은 주저앉은 소라도 최초 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으면 도축이 가능하다."

음성 :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사 씨인가요? 죽음도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

② 아레사 빈슨 사망관련 부분

화면 : 미국 버지니아에서 2008년 4월 16일에 열린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

음성 :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

자막 :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자막 :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③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부분

음성 :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

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특정위험물질 부분

화면 : 소의 특정위험물질 부위를 보여주는 그림(뇌, 눈, 머리뼈, 편도, 척수, 척주, 회장원위부)

음성 :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검사하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 이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이 바로 변형 프리온이다. 프리온이 특히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소의 부위를 특정위험물질이라 부른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7가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5가지는 들어올 수 있게 된다."

⑤ 정부 협상단 비판 부분

음성 :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과거 친일 매국노들처럼 오늘 혹 우리 자신은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⑥ 후속 정정 보도

〈PD수첩〉의 4월 29일 방송 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었고 〈PD수첩〉 제작진은 후속보도를 통해 일부 내용을 정정하고 사과했다. 2008년 5월 13일자 〈PD수첩〉에서 제작진은 4월 29일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여주었던 주저앉은 소, "즉 일어서지 못하는 소 전부가 다 광우병에 걸린 소로 오해하는 시청자도 있으나 소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꼭 광우병뿐만이 아니라 대사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고, 다만 광우병에 걸린 소가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2008년 6월 17일자 〈PD수첩〉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6월 12일 미국질병통제센터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인간광우병 때문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는 내용을 후속보도했다.

2008년 7월 15일자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사회자는 4월 29일자 프로그램에서 "제가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소' 라고 해야 할 것을 '광우병에 걸린 소' 라고 잘못 말한 부분에 대하여 후속방송에서 정정을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정정하며 아울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보도했다. 또한 "MM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었다고 인정하면서, 방송내용의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M형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2. 민사소송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0. 2. 9. 선고 2009가합17586 판결〉

〈PD수첩〉 광우병 프로그램 방영 직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고시를 연기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와 국내 도매업자가 MBC를 상대로 허위내용 보도로 인한 영업방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영업방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MBC가 원고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영문 오역이 있었지만 고의적이라는 증거가 없고, 일부 과장된 내용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PD수첩 외에 다른 언론사들도 주저앉은 소를 "광

"과거의 명예훼손 판결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적용해온 진실성과 상당성의 기준, 공적 현안과 공인의 기준이 〈PD수첩〉 사건에 적용되면서 영상매체를 포함한 언론매체의 여론형성기능이나 공개토론 기능이 공적 인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우병 의심 소"로 표현했고,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광우병으로 의심된다는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유전적으로 한국인에게 광우병 발병위험이 높다는 내용도 과학계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일부 과장되긴 했지만 다른 언론에서도 같은 취지로 보도한 내용으로 전반적인 측면에서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했다.

3. 형사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 20. 선고 2009고단3458 판결〉

〈PD수첩〉의 광우병 프로그램 방영 후 미국산 수입 쇠고기 협상단 대표를 맡았던 정부 관리들이 MBC의 담당 프로그램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였다. 〈PD수첩〉이 허위내용을 방송했고, 프로그램 후반부에서 사회자가 "과거 친일 매국노들처럼 오늘 혹 우리 자신은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발언하여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을 친일파나 다름없다고 비하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PD수첩〉의 방송내용 대부분이 진실에 속한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광우병 프로그램 영상 속에 등장하는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한 PD수첩 보도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도 방송 당시에는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그녀의 사망원인을 광우병으로 의심한 것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이기에 허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내용 중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 는 부분은 과장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어 허위보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명예훼손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PD수첩 허위의 방송내용으로 한국 협상대표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도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비록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 전에 독자적인 위험분석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그러한 절차를 마친 이후에도 주저앉은 소 영상이 공개되고, 미국산 쇠고기 리콜, 오염사료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광우병 의심 사망사례가 보고된 사실을 재판부는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대표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파악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언론으로서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PD수첩〉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행위는 언론자유에 속하며, 설사 정부관리들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고의가 아니었으며, 정부관리 개인을 특정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2010. 12. 2. 선고 2010노380판결〉

항소심 재판부도 〈PD수첩〉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서울지법 합의부는 〈PD수첩〉

방송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및 위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시간과 검토 없이 서둘러 협상을 체결한 정부를 비판한 공적 현안이고, 협상임무를 맡은 정부 관리들은 공적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내용 중에는 "지나친 과장과 일부 번역 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 등으로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하지만" 의도적인 왜곡이라기보다는 번역상의 오류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편집 방법에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려는 의도로 방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장"이 발견되었지만 "허위사실을 작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비록 위 방송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들이 위 방송 보도의 내용이 일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위 보도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그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판결했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대법원 역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을 재확인 해주었다. 〈PD수첩〉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식품 안전성 문제 및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협상체결과 관련한 정부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헌법상 보호받는 언론자유 영역이라고 판결했다. 비록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보도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긴 하지만, 국민의 먹을거리와 이에 대한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및 사회성을 지닌 사안이었고, 부분적인 허위사실 내용이 공직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고, 악의성도 없었다는 원심판단을 재확인했다.

4.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소송 판결

2008년 4월 29일 〈PD수첩〉의 광우병 프로그램 방송 직후 농림수산식품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5조, 16조에 근거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청구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농수산식품부가 PD 수첩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내용은 7가지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고발의 쟁점이 된 5가지(주저앉은 소, 아레사 빈슨 사망원인,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 확률, 광우병 위험물질(SRM)의 기준, 정부의 수입협상 대응 정책) 이외에, 3가지가 더 있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정부의 대응책이 없다는 방송내용과 라면이나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미국산 쇠고기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농수산식품부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대상이었다.

〈서울남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8가합10694 판결〉

서울남부지법은 7개 쟁점 중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으로 간주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2개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인정해 정정보도를 명령했고, 1개에 대해서는 허위지만 방송사가 이미 정정보도를 했으므로 실익이 없고, 1개의 경우 허위보도는 아니지만 반론보도의 필요성은 인정

"허위의 보도영상으로 인해 인격권 침해소송이 제기된 판례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보도내용과는 일치하지 않는 영상을 사용한 경우, 보도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음성해설이 덧붙여진 경우, 보도영상에 일방적인 주장만이 제시된 경우 등이다"

했다. 재판부는 주저앉은 소에 관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후에 진행된 민형사 소송에서는 허위가 아닌 사실로 판정되었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 한국인의 인간광우병 발병확률이 94%에 이른다는 내용 역시 허위로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도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그녀의 사망원인인 광우병이 아니라고 최종발표 하였으므로, 〈PD수첩〉 방송 내용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방송사에서 이미 정정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특정위험물질에 관한 보도 내용-모두 7가지인데, 30개월 미만의 소에게는 5가지가 해당되어 장차 국내 수입이 가능해진다는 방송내용-은 허위는 아니지만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인데 이를 알려주지 않아 시청자 혼란을 일으켰으므로 반론보도를 해주어야한다고 결정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가 없다는 방송내용, 라면스프나 화장품에 들어있는 미국산 쇠고기 성분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방송내용,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한국정부 협상단의 실태파악이나 그러한 노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방송내용은 사실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의견표명에 해당되므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서울고법 2009. 6. 17. 선고 2008나80595 판결〉

서울고법은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 발병확률 부분,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부분에 관하여 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허위의 사실적 보도라고 인정했으나, 이미 MBC의 후속보도로 인하여 정정보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이익이 없다고 기각하였다. 특정위험물질의 수입 부분에 관해서는 1심 판결의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가 없다는 방송내용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으로 간주한 1심과 달리 허위사실보도라고 판단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한국정부 협상단의 실태파악이나 그러한 노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방송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된다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의견표명이 아니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라면스프나 화장품에 들어있는 미국산 쇠고기 성분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수도 있다는 방송내용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의견표명으로 간주했다.

〈대법원 2011. 9.2. 선고 2009다52649 판결〉

대법원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청구된 7가지 내용 중 광우병 쇠고기를 먹은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확률이 94%에 이른다는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와 특정위험부위 관련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명령한 서울고법 판결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법에서 허위사실보도로 간주한 정부의 광우병 대응책과 한국정부 협상단의 무능력에 관한 방송부분에 대해서는 1심법원의 판결대로 의견표명으로 간주해 청구를 기각했다.

Ⅴ. 맺음말

허위의 보도영상으로 인해 인격권 침해소송이 제기된 판례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보도내용과는 일치하

지 않는 영상을 사용한 경우, 보도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음성해설이 덧붙여진 경우, 보도영상에 일방적인 주장만이 제시된 경우 등이다. 재판부는 언론매체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상당성을 인정해 준 반면, 허위로 판명된 일방적인 사실이나 주장만이 제시되어 피해를 입힌 사건의 경우 언론매체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다.

보도영상과 관련되어 제기된 인격권 침해소송 중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인 판례들도 있었다. 비록 방송 화면에 당사자들의 신상이나 초상이 직접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보도화면이나 내용의 정황상 원고의 특정이 가능한 경우였다. 법원은 피해자와 관련된 방송내용이 사실이고 공적인 현안인 경우 위법성을 조각했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 일반시청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황으로 보도했다며 방송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보도영상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은 공적 인물과 사적 인물을 구분해, 사인의 초상권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보호를 요구했다. 또한 범죄사실과 같은 공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범죄행위와 범죄자를 구분해 초상권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보도영상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소송 중에서는 당사자의 승낙여부가 쟁점인 사건이 많았다. 법원은 방송사가 초상권 사용 승낙을 지키지 않았거나, 애초의 약속과는 다르게 사용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었다. 또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보도라 하더라도 사적공간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단침입으로 간주해 배상명령을 내렸다.

〈PD수첩〉 광우병 프로그램은 영상저널리즘의 엄청난 영향력을 입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방송 이후 제기된 명예훼손과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방송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고 일부 과장과 오류는 있었더라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민-형사상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MBC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과거의 명예훼손 판결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적용해온 진실성과 상당성의 기준, 공적 현안과 공인의 기준이 〈PD수첩〉 사건에 적용되면서 영상매체를 포함한 언론매체의 여론형성기능이나 공개토론 기능이 공적 인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의 쟁점이 된 방송 내용 중 주저앉은 소와 아레사 빈슨 사망원인에 대한 방송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민형사 소송 재판부와 정정/반론보도 소송 재판부 간에 상이한 판정을 내렸다. 또한 정정/반론보도 소송에서 사실적 주장의 허위여부, 사실과 의견의 구분에서 1심과 2심 판결에서 일부 차이를 보였다. 인격권 침해 여부의 주요 판단 기준인 허위사실의 판정기준, 사실과 의견의 구분 기준이 아직 불명확하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